

# 瑞山市廢棄物管理條例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 1998. 8. 20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8. 8. 21
- 라. 上程日字 : 1998. 8. 26, 8. 28

##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環境保護課長 崔鎮珏)

### 가. 提案理由

폐기물 관련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관계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각종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 규정함(안 제2조)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조정(안 제5조)
- 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시설 용기 등의 설치관리 기준 개정(안 제5조)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
-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할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의 공급, 또는 판매 절차와 위탁 근거마련(안 제11조, 12조)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의 현실화와 부과 징수기준 마련(안 제15조)
- 폐기물 매립장 이용자에 대한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 근거마련(안 제19조)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98.6. 5 서산시공고 제156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하고, 각종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성안 되었음.
- 다만, 안제6조 제2항 " 완전히 제거" 를 " 제거" 로, 안제10조 제2항 " 시명" 을 " 기관명" 으로 안 제24조 제1항 다만 " 폐기물관리법" 을 다만 " 법" 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 안제8조 3항의 재활용품수입 장려금과 제4항의 폐기물 투기행위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되었으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기준이 불명확하며,

또한, 안제25조 과태료의 경감을 50%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경감기준이 마련 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별표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수정 가결

※ 수정안 별첨

##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완전히”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시명”을 “기관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을 “법”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p> <p>①(생략)</p> <p>②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u>완전히</u> 제거하여 ----- 배출하여야 한다.</p> <p>③ ~ ⑨(생략)</p> <p>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등) ①(생략)</p> <p>②시장은 ----- 주의사항, <u>시명</u> 및 연락처, -----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 ⑥(생략)</p> <p>제2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u>폐기물관리법</u> 제7조 및 ----- 발부할수 있다.</p> <p>② ~ ③(생략)</p>	<p>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p> <p>①(현행과 같음)</p> <p>②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제거하여 ----- 배출하여야 한다.</p> <p>③ ~ ⑨(현행과 같음)</p> <p>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등) ①(현행과 같음)</p> <p>②시장은 ----- 주의사항, <u>기관명</u> 및 연락처, -----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 ⑥(현행과 같음)</p> <p>제2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u>법</u> 제7조 및 ----- 발부할수있다.</p> <p>② ~ ③(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제 10 호
의결 년 월 일	1998. 9. 3. (제 호)

##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 8. 20.

#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
----------	----

제출일자 : 1998. 8.20.

제출자 : 서산시장

## 1. 제안이유

폐기물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용어와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 규정함(안 제2조).
- 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조정(안 제3조).
- 다. 폐기물의 분리·보관방법 및 시설용기 등의 설치관리 기준 개정(안 제5조).
- 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가연성, 매립대상, 음식물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류 등으로 세분화(안 제6조).
- 마. 폐기물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8조).
- 바. 쓰레기봉투를 종전 일반용과 공공용 2종에서 일반용을 소각용, 음식물용, 매립용으로 세분화(안 제9조).
- 사. 경영수익을 위한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표기 근거 마련(안 제10조).
- 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종의 공급, 또는 판매절차 개선 및 판매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 안 제12조).
- 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기준 현실화(안 제15조).
- 차. 폐기물매립장 이용자에 대한 매립장 처리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안 제19조).

## 3. 참고 관련자료

- 가. 폐기물관리법
- 나.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

##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9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의류 등 별표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4의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8.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10. “매립대상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매립처리해야만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 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별표2와 같다.

## 제 2 장 생활폐기물 처리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또는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방법 및 시설용기 등의 설치관리) ①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 및 제16조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시설용기의 규격은 시 보유수거 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는 교통·도시미관·주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장소에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용기에 담아 이를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용기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물이 새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9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스티커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 폐기물 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에서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매점 또는 관리소 등을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⑤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 배출장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일시적으로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처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생활폐기물 매립장관리인(관리인이 없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자가 직접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신고서 접수시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등의 혼합배출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 처리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장 지정관리인이 있는 매립장은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수수료를 납부후 처리할 수 있다.

⑦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 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사료·퇴비로 개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 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방법 또는 수거일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음식물·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은 쓰레기봉투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 시설을 설치하

게 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일반용봉투는 소각용봉투·매립용봉투·음식물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용봉투에는 주민의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및 골목쓰레기 등 공공의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③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4종(1,000, 2,000, 3,000, 5,000원권)으로 하고 재질은 얇은 종이로 하며, 색깔은 종류별 각각 다른 색으로 한다.

④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4와 같다. 단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 단체 표준 규격으로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필증은 일련번호와 재사용을 못하도록 얇게 인쇄하여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민간제조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 여부를 확인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설명서는 별표5와 같다.

⑥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을 제작함에 있어 상업광고 표기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또는 판매) ①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

업자가 공급 한다.

②음·면·동장 및 위탁판매업자는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일반용봉투·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자에게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에 당해 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9퍼센트 범위 내외에서 판매이윤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공공용봉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 수거시 음·면·동장이 공급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업무 위탁) ①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서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2.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에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무 위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보관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 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시 채권확보 내용
5. 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

제13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①쓰레기규격봉투 판매(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로 지정 받은 판매자는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임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별표7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판매소 설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반주택지역은 통당 1개소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 조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지역의 경우 1개소로 지정하되 필요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3. 농촌·산간지역은 자연발생 취약(마을)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다.

④판매소 지정기준은 슈퍼마켓, 담배가게, 24시편의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주민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정하여야 하며, 제6항에 의하여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는 받을 수 없다.

⑤판매소의 지정절차,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 제작된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취급

2. 정당한 사유없이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기피 또는 1개월 이상 무단 휴업

3. 제15조제1항의 기준 봉투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가격을 임의 변경 판매

4. 판매소의 임의 양도·양수시

5. 기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행위 등에 있어 시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4조(판매자 준수사항) ①판매자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의 준수(판매가격 요율표 제시)

3. 불법·위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기타 행정지시사항

②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 제 3 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의 수수료는 당해연도 자립비율을 적용한 별표8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고시하는 가격에는 일반용봉투 판매가격, 판매소 납품가격, 판매소 판매이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량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처리 수수료는 별표9와 같다.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별표10의 산출기준으로 정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 고시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와 별표11의 서식에 의하여 협약하여 부과 및 징수를 위탁하되 5퍼센트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연탄재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음·면·동장이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만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②음·면·동장은 시장에게 익월 5일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내역을 첨부하여 매월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제17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

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 포함)
2. 천재지변으로 재력 상실자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리터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읍·면·동장이 무료로 배부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업소에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제19조(매립장 처리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매립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9에 해당되는 처리 수수료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 다량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 일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을 준용하여 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4 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3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처분사전통보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

료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경감기준) 과태료의 경감은 부과권자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서산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①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가 설치기준 등에 부적정 할 때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장 처리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②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장 처리 수수료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 한다.

③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 배출요령 또는 수거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역내 폐기물매립장이 있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 (제2조)

종 류	품 목	배 출 방 법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마켓 등에 팔 수 있음
	- 농약병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별표 2]

##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 (제3조 관련)

읍·면·동별	제 외 지 역	비 고
팔 봉 면	고파도리  도성2리	고파도  우도, 분점도
지 곡 면	도성3리	저도  ※ 단, 제외 지역중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별표 3]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 방법 및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 제5조 관련)

1.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구 분	종 류 별	분 리 방 법	보 관 및 배 출 방 법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생활폐기물	가 연 성 폐 기 물	배출자가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	
		음 식 물 류 폐 기 물	
	재활용품	종 이 류, 의 류	배출자가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캔 류, 고 철 류	
		병 류	
플 라 스 틱 류			
기 타(건전지, 스티로폴등)			
연 탄 재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배출		
대 형 폐기물등	배출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스티커 판매소에서 구입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된 장소에 수시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 지역	생활폐기물	가 연 성 폐 기 물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된 장소에 배출
		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	
		음 식 물 류 폐 기 물	
	재활용품	종 이 류, 의 류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된 장소에 배출
		캔 류, 고 철 류	
		병 류	
플 라 스 틱 류			
기 타(건전지, 스티로폴등)			
연 탄 재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배출		
대 형 폐기물등	배출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스티커 판매소에서 구입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된 장소에 수시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은 비닐, 병뚜껑, 폐각류등 재활용을 어렵게하는 물질은반드시 제거후 배출(소금 등은 행구어 배출)

## 2. 보관시설 설치 기준(공동주택은 세대수, 대형건물은 수용인원 기준)

구 분	기 준		수 량	비 고
	세대수(세대)	수용인원(명)		
압 축 용 기	20 ~ 40	100 ~ 200	1개	121세대, 601명이상은 압축 용기를 20세대 100명당 1개 추가
	41 ~ 60	201 ~ 300	2개	
	61 ~ 80	301 ~ 400	3개	
	81 ~ 100	401 ~ 500	4개	
	101 ~ 120	501 ~ 600	5개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	20 ~ 40	100 ~ 200	1조	121세대, 601명이상은 분리 용기를 40세대 200명당 1조 추가
	41 ~ 80	201 ~ 400	2조	
	81 ~ 120	401 ~ 600	3조	
음식물류폐기물전용 수 거 용 기 (위탁처리의경우)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10세대당1개이상	자동상차 기능 용기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1개이상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등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관용기 : 10세대당 1개이상</li> <li>○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탈취시설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량 : 100세대당 100kg/일 이상 (100세대초과시는 1세대당 1kg/일씩 용량 추가)</li> <li>- 방법 :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등</li> </ul> </li> </ul>	

## 3. 보관시설 용량 기준

압축용기	종이류, 의류	캔류, 고철류	병 류	플라스틱류	음식물류 폐 기 물
1,100리터	1,000리터이상	400리터이상	400리터이상	400리터이상	120리터

※ 단 청소장비(압축차량) 및 음식물류폐기물수거차량의 사양에 의한다.

[별표 4]

1.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 ( 제9조제4항 관련 )

구 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목 음 끈 길이(cm)	두 개 (cm)	색 질
일반용	2ℓ	19 × 23	10	0.020	○ 일반용중 -매 립 용 : 반투명색 -소 각 용 : 선 홍 색 -음식물용 : 투명녹색
"	5 ℓ	28 × 30	14	0.015	
"	10 ℓ	33 × 40	16	0.020	
일반용 공공용	20 ℓ	41 × 49	18	0.025	○ 공공용 : 투명청색 ※ 일반용은 매립용, 소각용,음식물용으 로 구분한다.
"	50 ℓ	56 × 67	23	0.030	
일반용	100 ℓ	71 × 85	28	0.040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 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공업진흥단체표준규격(한국플라스틱표준)에 의한다.

$$* \text{ 여분의 길이 (cm)} = \frac{\text{가로길이 (cm)}}{\pi} + 5\text{cm}$$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제9조제3항 관련)

종 류	크 기	바 탕 색	글 씌
1,000원권	가로10cm×세로15cm	연두색	고딕체 검은색
2,000원권	"	하늘색	"
3,000원권	"	노란색	"
5,000원권	"	빨간색	"

[별표 5]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설명서  
( 제10조제5항 관련 )

1. 쓰레기봉투의 제작 설명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서 산 시

쓰레기봉투 (20ℓ)

-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매립대상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서 산 시 장

연락처 : 서산시청 환경보호과  
(전화 :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서 산 시

쓰레기봉투 (20ℓ)

-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소각대상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서 산 시 장

연락처 : 서산시청 환경보호과  
(전화 :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서 산 시

쓰레기봉투 (20ℓ)

- 음 식 물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류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남아 묶은후 버려야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서 산 시 장

연락처 : 서산시청 환경보호과  
(전화 :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서 산 시

쓰레기봉투 (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 산 시 장

연락처 : 서산시청 환경보호과  
(전화 :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 2ℓ, 5ℓ, 10ℓ, 50ℓ, 100ℓ 용량 : 20ℓ 와 동일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설명서

서산 제 00000 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금 0000원권

품 명 :

규 격 :

배출자 주소 : 서산시 읍·면·동 리·통 번지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

[별표6]

광 고 수 수 료 ( 제10조제6항 관련)

용 량	광 고 료 (매당)	비 고
2리터용	2원	
5리터용	4원	
10리터용	6원	
20리터용	9원	
30리터용	12원	
50리터용	17원	
100리터용	20원	

[별표 7]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 제13조 관련 )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8]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 제15조 관련 )

1. “수집·운반·처리비” 산정

$$\text{수집·운반·처리원가/톤} \div 2,500 (\text{쓰레기 } 1\ell \text{의 무게를 } 0.4\text{kg}) \times \text{봉투용량}(\ell)$$

※ 당해연도 수집·운반·처리기간은 전전년도 하반기부터 전년도 상반기 까지로 한다.

2. 연도별 자립도 적용 비율

년도별 용량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이 후
적용비	40%	50%	60%	70%	80%	100%

3.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용량별	일반용 봉투	비고
2ℓ	수집·운반·처리비 × 당해년도 자립도 + 봉투제작비 + 판매이윤	※ 단 음식물용 및 소각용은 산정 가격의 1/2로 한다.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주] 십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9]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다량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제2조, 제6조 및 제15조 관련)

품 명	규 격	기준	수 수 료(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반입료)
냉 장 고	500ℓ 이상	개	8,000	4,800	3,200
	300ℓ 이상		6,000	3,600	2,400
	300ℓ 미만		4,000	2,400	1,6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개	5,000	3,000	2,000
	42인치 미만		3,000	1,800	1,200
세 탁 기	모든규격	개	4,000	2,400	1,600
에 어 콘	264m <sup>3</sup> 형 이상	개	8,000	4,800	3,200
	66m <sup>3</sup> 형이상~264m <sup>3</sup> 미만		5,000	3,000	2,000
	66m <sup>3</sup> 형 미만		3,000	1,800	1,2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개	4,000	2,400	1,600
	높이 1m 미만		2,000	1,200	800
탈 수 기	모 든 규 격	개	2,000	1,200	8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개	2,000	1,100	900
	높이 1m 미만		1,000	600	400
장 능	120cm장 1쪽	조	15,000	9,000	6,000
	90cm장 1쪽		10,000	6,000	4,000
소 파	대형 6인용	조	8,000	6,400	1,600
	소형 4인용		5,000	3,000	2,000
서 랫 장	5단 이상	조	4,000	2,400	1,600
	4단 이하		2,000	1,200	800
책 상	양수, 대형	개	5,000	3,000	2,000
	번수, 소형		4,000	2,400	1,600
식 탁	6인용 이상	개	5,000	3,000	2,000
	6인용 미만		4,000	2,400	1,6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개	10,000	6,000	4,000
	그 랜 드		15,000	9,000	6,000
침 대	2인용	개	8,000	6,400	1,600
	1인용		5,000	3,000	2,000
문 감	모 든 규 격	개	3,000	1,800	1,200

※ 상기의 품목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2.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 ( 제15조 관련 )

대 상	기 준	처리 수수료 (원)			비 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다량 생활폐기물	톤당	10,000	6,000	4,000	

- ※ 주) 1.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매립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력으로 상차시 수집·운반비의 100%를 가산 징수 할 수 있다.  
 3. 1톤초과시에는 1톤기준 수수료 금액을 100kg당 비율로 환산하여 가산한다.

[별표1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15조 관련)

수집방법	구분		수수료산출기준
전용봉투 사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사용제외지역)		쓰레기일반용봉투 판매가격 × 0.5
전용수거 용기사용	공동주택	분양면적 31평초과	매월 : $A \times 5인 \times 30일 \times B \times 0.8$
		분양면적 31평이하	매월 : $A \times 4인 \times 30일 \times B \times 0.8$
	의무사업장		매월 : $1일배출량 \times 30일 \times C \times 0.8$

주) 1. A : 음식물류폐기물 전국평균 1인 1일 배출량

B : 쓰레기 봉투값 1ℓ 단가

C : 의무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 당 단가

2.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 0.8kg

3. 부과기준 : 1개월(30일기준)

4. 아파트 평형기준

가. 31평초과하는 세대는 5인 기준

나. 31평까지 해당하는 세대는 4인 기준

5.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 수수료 산출액의 100원미만은 절사

[별표1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서(제15조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한다)징수업무를 시  
장(이하 “갑” 이라한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하 “을” 이라한다)에게  
위탁 처리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서를 작성·날인하여 보관 한다.

다 음

제1조(목적) “갑” 은 수수료 부과·징수업무를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 에게 위탁 부과·징수토록 하고 “을” 이 징수한 금  
액을 다시 “갑” 에게 납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기준) “을” 은 아파트 주민들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반드시 분리·배출  
하고 수수료를 배출자에게 부과하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 출 량 : 1인 1일 배출량 = ○ kg(전국평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2. 부과기일 : 1개월(30일 기준)
3. 쓰레기 봉투값 : 1ℓ = ○원
4.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 0.8kg
5. 아파트 평형기준
  - 가. 31평형까지는 4인 기준
  - 나. 31평형초과는 5인 기준
6. 계산방식(100원미만 절사)
  - 가. 31평초과 : 1인1일배출량(○kg)×5인×30일×쓰레기봉투1ℓ 단가(○원)÷0.8kg
  - 나. 31평이하 : 1인1일배출량(○kg)×4인×30일×쓰레기봉투1ℓ 단가(○원)÷0.8kg

제3조(수수료납부및감면대상) ○○○아파트 수수료 납부 및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다  
(감면대상자 별첨)

구 분	수거세대수	감면세대수	수수료납부세대수	납부금액
계				
31평형초과				
31평형이하				

제4조(수수료 고지) “을”은 배출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아파트관리비 징수 절차에 의하여 관리비에 포함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기간 및 납부) “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매월 말까지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중 위탁수수료 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다음달 5일까지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시기) 수수료 징수는 ○○년 ○○월 ○○일부터 시행 한다.

제7조(수수료납부내역 기록보존) “을”은 수수료납부내역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협약되지 않은 내용은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서산시 읍내동 492번지  
서 산 시 장(인)

“을” 서산시 ○○○읍·면·동 ○○리 ○○번지  
○○○아파트 관리소장 ○○○(인)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 전화 :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 산 물 처 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월		kg/월	kg/월		
가 재 활 용 계	재 활용 량	재 활용 방 법			재 활용 장 소		
	kg/월						
위 탁 재 활 용 계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 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폐기물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재 활 용 용			
		자 가 감량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누 계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 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 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 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6호서식 ]

납 부 서		주 소		성 명		관		정 상 적		수 수 료	
납 부 자	주 소	성 명	관	정 상 적	관	외 수 입	관	외 수 입	항	수 수 료	수 입
개 입											
과 목											
봉투·스티커 구입내역											
용 량	수 량	단 가	금 액								
2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스티커											
계											
납 입	각은행 본점, 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전국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상 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99										

수남은행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1)		주 소		성 명		관		정 상 적		수 수 료	
납 부 자	주 소	성 명	관	정 상 적	관	외 수 입	관	외 수 입	항	수 수 료	수 입
세 입											
과 목											
봉투·스티커 구입내역											
용 량	수 량	단 가	금 액								
2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스티커											
계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99										
서산시장 귀하											

시청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2)		주 소		성 명		관		정 상 적		수 수 료	
납 부 자	주 소	성 명	관	정 상 적	관	외 수 입	관	외 수 입	항	수 수 료	수 입
세 입											
과 목											
봉투·스티커 구입내역											
용 량	수 량	단 가	금 액								
2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스티커											
계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99										
서산시장 귀하											

읍면동사무소 보관용

영 수 증		주 소		성 명		관		정 상 적		수 수 료	
납 부 자	주 소	성 명	관	정 상 적	관	외 수 입	관	외 수 입	항	수 수 료	수 입
세 입											
과 목											
봉투·스티커 구입내역											
용 량	수 량	단 가	금 액								
2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스티커											
계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199										
수남은행 (인)											

납부자 보관용

[별지 제7호서식]

남 부 서											
납 부 자	주소	성명									
	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로 수입						
세입 과목		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로 수입			
목		쓰레기처리수수료									
수수료 금액	금 ( ₩ )	원 ( 원 )									
납입 장소	각은행 본점, 지점 및 각 에.금취급소, 전국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99									
수남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1)											
납 부 자	주소	성명									
	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로 수입						
세입 과목		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로 수입			
목		쓰레기처리수수료									
수수료 금액	금 ( ₩ )	원 ( 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199									
서산시장 귀하		시청보관용									

영수필통지서(2)											
납 부 자	주소	성명									
	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로 수입						
세입 과목		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로 수입			
목		쓰레기처리수수료									
수수료 금액	금 ( ₩ )	원 ( 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199									
서산시장 귀하		읍면동사무소 보관용									

영 수 증											
납 부 자	주소	성명									
	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로 수입						
세입 과목		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수수로 수입			
목		쓰레기처리수수료									
수수료 금액	금 ( ₩ )	원 ( 원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199									
수남은행 (인)		수남은행 (인)									
남부자 보관용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			
6. 의견 제출	기관명		부서명
	주소		
	기한	년 월 일까지	

서 산 시 장 (인)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 호

반 음

제 목 : 과태료처분통지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 제 조 제 항 의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하여

법 제 조 제 항 의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199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산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199 년 월 일

서 산 시 장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과태료(폐기물관련)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 또는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9 . . . . .		
서 산 시 장 (인)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과태료(폐기물관련)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과태료금액		
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199 . . . . .		
수납은행 : (인)		

영수필통지서

(서산시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과태료(폐기물관련)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과태료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99 . . . . .		
수납은행 : 서산시청 귀하)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과태료(폐기물관련)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과태료금액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199 . . . . .		
수납은행 (인)		

가

##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납부일자	의견진술서기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특기사항

#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나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납부일자	의견진술서기간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서기간까지 처분기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 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 산 시 장 (인)

# 과 태 료 납 부 서

다

발행번호	제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 과태료납부영수증

라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	--

#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마

발행번호	제 호	회개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p style="text-align: center;">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서      산      시      장</p>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고 지 금 액	취 소 (변 경) 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199 년 월 일

서 산 시 장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납부기간		처분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 하

제 호

받 음 :

보 냈 : 서 산 시 장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법 제 조 항과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용	통 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부 과 기 관		이의제기일자	

-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 별지 제17호서식 ]

과 태 료 수 납 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금 액	남 부 의 주 성 명	무 자 소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 초	독 촉					이의제기일	법원통보일